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5년 해빙기대비 공사현장 특정감사 －

2025. 4.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 호	소 관	건 명	행 정 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금액	감 액	금액	추 징	금액
계		3건	3	0	0	0	0	0	0	0
1	□□□□과	& & ○○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1							
2	□□□□과	& & ※※1리~※※2리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1							
3	☆☆☆☆☆ ☆ 과	◎◎ 모빌리티 튜닝산업 지원센터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1							

2. 처분요구일람표

1.	&& ○○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1
2.	&& ※※1리~※※2리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6
3.	◎◎ 모빌리티 튜닝산업 지원센터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13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시 □□□□과에서는 “&& ○○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를 아래 「표」와 같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표] 사업 개요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			사업기간	계약자
			계	도금액	관금액		
& & ○○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 & 동	도시계획도로 L=0.7km	2,802	1,758	1,044	2023. 10. 26. ~ 2025. 8. 13.	(주)▽▽건설 000

1. 식생옹벽 블록 시공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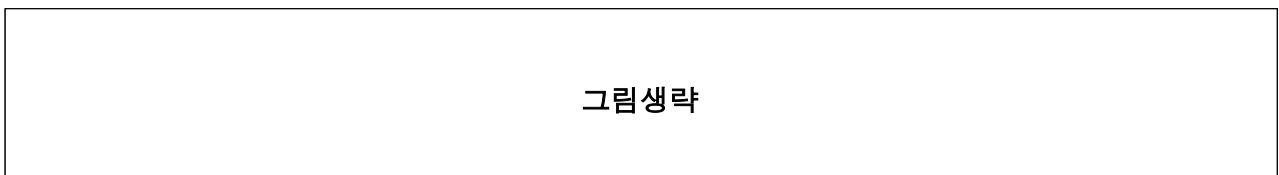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 제138조 및 제14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 단계별 시공 상태의 확인 업무를 수행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

지 아니하게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 목적물이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시 □□□□과에서는 위 공사에 대하여 감사일¹⁾에 현지 확인한 결과 현재 시공된 식생옹벽 블록이 설계 도면과 달라 구조 검토를 실시한 결과 「그림」과 같이 부적정하게 시공²⁾되어 재시공 비용 약 000,000천 원(제경비 포함)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림] 부적정 식생 옹벽 블록 전경



2. 식생옹벽 블록 기성검사 및 대가 지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

1) 2025. 3. 4. ~ 3. 10.

2) 당초 식생옹벽 블록 전면 경사는 1:0.3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제 시공은 전면 경사가 수직으로 시공되어 있어 관계 전문가인 토질및기초기술사의 구조검토 결과,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아 전면 재시공(좌측 NO5+5.0~NO9+13.0, 우측 NO5+0.0~NO10+8.0, A=250㎡)이 필요.

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으며,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시 □□□□과에서는 위 공사의 식생옹벽블록에 대하여 당초 설계 도면대로 설치되지 않았음³⁾에도 기성검사(설계량 647m², 기성 신청량 550m²)를 실시하여 00,000천 원을 부적정하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3. 공사감독 업무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

3) 기성 검사일은 2024. 12. 05.이고, 식생옹벽블록의 설계 기울기는 1:0.3이나 현장은 수직으로 설치됨. 이에 따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식생옹벽블록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한 결과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아 전체 재시공 필요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시 □□□□과에서는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조립식 가설사무소(180㎡) 및 가설창고(60㎡)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가설콘테이너(2동)를 설치하였는데도 이에 따른 사업비 00,0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았으며, 또한 당초 계획된 침사지 및 가배수로의 일부만 설치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시공지시 또는 현지 여건상 시공 불필요시 그에 따른 사업비 00,0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도면 및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된 식생옹벽블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재시공하시기 바라며, 식생옹벽블록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기성 대가 지급된 00,000천 원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③ 설계도서와 다르게 일부만 설치된 침사지 및 가배수로는 적정하게 설치하시기 바라며, 과다 계상된 사업비 00,00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아래 관련자 중 井井井, ◇◇◇은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1리~※※2리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시 □□□□과에서는 ○○시 &&읍 ※※리 일원 “&& ※※1리~※※2리간 도로개설공사”를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 업 량	공 사 금 액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액	관급액			
& & ※※1리~ ※※2리간 도로 개설공사	○○시 &&읍 ※※리	도로개설 L=3.3km, B=8m	6,104	3,761	2,343	2023.08.10.~ 2025.08.08.	◆◆종합건설(주) 000	50%

1. 공사현장 안전 및 환경관리 업무 소홀

가. 공사현장 안전조치 미흡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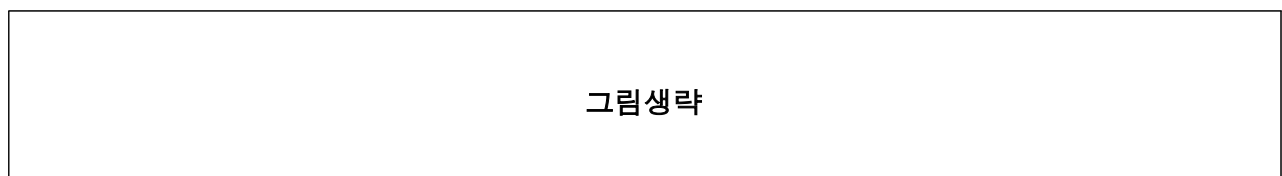
또한 같은 규칙 제33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⁴⁾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하며,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

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토사가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여야 하며 굴착면의 기울기는 규정에 맞게 해야 하고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공사가 도로공사 사면절취 시 설계도면대로 굴착면의 적정 기울기를 확보하여야 하나 [사진 1]과 같이 굴착지반이 모래~풍화암 지반(설계상 기울기는 1:1.2)이나 암반수준으로 기울기가 급하게(1:0.5~1:1.0) 굴착하였고 또한 굴착면 상부에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암석 등을 적치하였으며, 사면 절취 일부구간에서 낙석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작업자 출입금지 등 조치하지 않았고 빗물 침투 등을 대비하여 굴착면을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지 않는 등 현장 안전 조치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시 □□□□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토사 붕괴로 인한 현장 작업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사진 1] 공사현장 사진



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 등 환경관리 부적정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비산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 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⁵⁾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39조제1항 관련)

지반의 종류	굴착면의 기울기
모래	1 : 1.8
연암 및 풍화암	1 : 1.0
경암	1 : 0.5
그 밖의 흙	1 : 1.2

4)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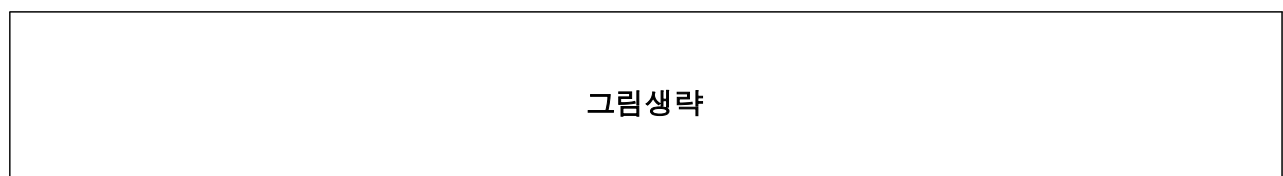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14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공사는 공사면적 1,000㎡이상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이에 건설사업자는 2023. 9. 15. ○○시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으며 상기 법령에 따라 배출공정(야적, 수송, 싣기 및 내리기 등)에 적합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사현장 확인결과, 시공사가 [사진 2]와 같이 지난 2. 7.부터 토사를 현장 내 야적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시 □□□□과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비산먼지에 따른 지역주민 및 작업자의 건강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 2] 토사 야적 현황



그림생략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수립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⁶⁾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 □□□□과에서는 본 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시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공사감독자 인원을 적절히 배치해 건설공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법령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공사감독 업무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6)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및 제138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계별 시공상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2021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 8. 교통안전시설공(설계요령)에 따르면 차량용 방호울타리 관련 적용구간에 따라 방호울타리의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기본구간에는 SB1~SB3를 설치하고 위험구간에는 SB4~SB5를 적용하며 고속구간에서 특수구간이나 특수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구간에는 SB5-B, SB6, SB7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로부터 위임받은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 목적물이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 □□□□과에서는 시공사가 교량(연장 45m)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에도 없는 교명주 4개소 설치를 위해 기초 타설을 완료하였는데도 설계도면 및 시공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낙석이 진행되고 있는 No.97+5~No.109. 사면 절취구간의 사면안정성검토 등 적정한 기술 검토 없이 톤마대 쌓기 추가 및 공법변경(L형 측구→L형 옹벽·계비온 옹벽)하였으며 교량구간(위험구간) 방호울타리는 이에 적합한 등급의 차량용 방호울타리(SB4)로 설계되어야 하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 설계되어 있는데도 설계변경(감액0,000천 원)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불필요한 교명주가 설치⁷⁾될 우려가 있고 설계기준에 맞지 않은 방호울타리 시공에 따른 향후 안전사고 및 재시공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사면절취 구간·야적장 관리, 불필요한 교명주 삭제, 사면절취(낙석)구간 안정성 검토 실시, 적정등급 차량방호울타리로 변경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시기 바라며, 토공사 부실 및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해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에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과다계상된 사업비 0,00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아래 관련자 중 ◇◇◇은 주의처분 하시고, □□□은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7) 「2021년도 국토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국토교통부)」 4.03 구조물공 수량산출요령에 따르면 장대교량 및 특수 교량과 같이 조형미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교량에만 설치토록 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모빌리티 튜닝산업 지원센터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시 ☆☆☆☆☆☆과에서는 ♡♡면 ☆☆리 1469번지 ○○ 모빌리티 튜닝 산업 지원센터 건축공사를 아래 [표 1]과 같이 담당하면서 2022. 10월부터 2025. 3월 감사일 현재까지 필수적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의뢰, 처리하였고 해빙기 안전관리 및 건설사업관리 등 공공건축물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발주부서 (사업기간)	건축 협약	착공 (완료일)	설계 금액	공사 금액	도급자 (감리자)	비고
1	○○ 모빌리티 튜닝 산업 지원센터 건축공사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2,057.48㎡	☆☆☆☆☆☆과 (22.10~25.10)	24.1.17.	24.6.12 (24.9.12)	380	4,823	◇◇종합건설(주) (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1. 착공신고 및 건설사업관리 등 사전절차 이행 부적정

「건축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에 건축 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 감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르면 발주청의 기술 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등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 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에서는 공사 시행 전에 건축허가 서류를 구비하여 허가권자와 협의를 한 후 계약을 의뢰하고, 착공신고서에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 감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기술 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등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시 ☆☆☆☆☆☆과에서는 ○○ 모빌리티 튜닝산업 지원센터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관련법령 검토를 소홀히 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지 못한 채 2024. 6. 12. 공사를 선 착공하여 76일의 공사 기간 연장을 한 후 92일이 지난 같은 해 9. 12. 에서야 착공 신고수리를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 취지와 달리 착공신고 수리 및 건설사업관리 지연 등으로 불필요한 공사기간 연장 및 동절기 습식 공사 진행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추락 및 낙하물 등에 대한 안전조치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4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⁸⁾, 수직

보호망⁹⁾ 또는 방호선반¹⁰⁾의 설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7조 및 제13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주요 구조물의 시공 중 붕괴사고, 부실시공 등의 발생원인이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시설의 구조 및 시공 부주의에 기인하는 점을 명심하여 공사 시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가시설에 대한 설계, 구조, 시공의 검토를 하도록 하고, 시공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 공사와 영구 시설물 공사의 작업단계별 시공상태를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시에서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진행하면서 작업 중 낙하물 및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 시공된 수직보호망 시공상태를 확인하여 탈락 또는 훼손된 경우 즉시 재설치 하도록 하며, 폐기물 처리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현장 정리 등 공사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시 ☆☆☆☆☆과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시스템비계 작업자 이동계단 설치 부적정,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캡, 수직보호망 훼손 및 현장정리 부적정 등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둔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 취지와 달리 작업 중 낙하물에 의한 안전사고와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8)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하여 설치

9)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 등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10) 작업 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판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비계내측 및 외측 그리고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가설물

[그림] ©© 모빌리티 튜닝산업 지원센터 건축공사 안전관련 부적정 현황

그림생략

3. 설계공모 관련 저작권 귀속 부적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6조 및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르면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창작물의 저작자는 저작권(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은 출품자(창작자)에게 있으며, 공모전을 주최하는 기관은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¹¹⁾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고, 입상작에 대해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상작을 발표한 후 거래 관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해당 응모자와 별도 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인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응모자에 대해 상금 등을 지급하는 조항은 설계 공모전에 대해 참여를 유도하려는 ‘포상금’ 또는 ‘격려금’의 성격이므로 권리 양수의 대가를 미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발주 기관이 설계자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전부 양도받는 조항은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이기에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11)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저작권법」 제14조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 전속적인 권리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공모전의 주최 기관이 응모작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됨

따라서 ○○시에서는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하면서 설계공모 지침서 상 제출 작품에 대하여 별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계자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귀속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후 활용 등에 관하여는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시 ☆☆☆☆☆☆과에서는 ○○ 모빌리티 튜닝산업 지원센터 건축공사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하면서 설계공모 지침서상에 당선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시에 귀속되고 당선작 외의 작품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저작자와 별도의 협의 없이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응모자와의 별도 협의 없이 설계자의 저작권 등을 ○○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설계공모지침서에 공고하여 공모전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저작권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4.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적용 부적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참고하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며, 배치기준(안), 의견 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에서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참고하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배치기준(안),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시 ☆☆☆☆☆과에서는 ○○ 모빌리티 튜닝산업 지원센터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의견수렴 결과 등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주의)
- ② 진행 중인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시설 등은 규정에 맞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상기와 같이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 ▽▽▽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